2019년도 제2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 2019. 11. 11.(월요일), 10:30

o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최현용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24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40건(안건번호 제2019-144022호~144911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19-144022호~144065호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한화 전체분량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19-144066호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수의 영상저작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시정권고의 필요성은 인정됨. 하지만 삭제 또는 전송중단 권한이 있는 주체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해당 안건이 자율적 시정기회 부여라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관한 수사의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194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4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민원인, 민원 내용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저작권침해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회의록 6쪽의 게시물 내용, 7쪽, 9쪽, 11쪽, 12쪽의 사이트명, 게시물 제목 및 저작물명, 8쪽의 민원내용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 해당 정보들은 비식별 처리한 후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의견임.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민원내용, 사이트명, 게시물 내용 및 제목 등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19-144022호~144911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1,240건임.
  (심의 요약 안건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목록을 제시하면서)보호원은 불법복제물 모니터링을 할 때 모바일용 웹하드와 PC용 웹하드를 구분하고 있음.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가 PC용 웹하드에 영상물 파일을 업로드하면 모바일용 웹하드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인코딩(encoding)을 거친 후 모바일용 웹하드에 다시 업로드됨.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url 주소와 같은 불법복제물등의 위치 정보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모바일용 웹하드와 PC용 웹하드의 게시물 주소가 상이하여 PC용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이 삭제되더라도 모바일용 웹하드에서 삭제되지 않음.
  중앙전파관리소도 동일한 웹하드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PC용 웹하드와 모바일용 웹하드를 별도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4022호~144065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카페나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한 화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2009년에 방영된 일본 애니메이션 '페어리 테일',

2001년 일본 TV도쿄에서 방영된 '후르츠 바스켓'을 제공하고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44022호~14406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44022호~144065호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정 권고 필요성이 인정됨.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44022호~14406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4066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사이트 전체를 신고한 것으로 보호원은 심의대상 게시물 1건을 특정하여 심의를 요청하였음. 해당 안건은 한국 드라마, 예능, 영화 다시보기 사이트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한 화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사이트 메인 화면 및 영상을 제시하면서)해당 사이트에서 다수의 영상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수 없고 게시글 작성 권한도 없는 것으로 보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심의대상 게시물을 업로드한 것으로 보임. 또한 사이트 운영자는 광고 게재를 통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으나, 서버는 국내에 위치한 것으로 보임. 단순 도관 서비스제공자나 도메인 판매사이트가 심의대상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전송중단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큼.
참고로 보호원은 내규인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 업무처리규칙」 제21조 제1호, 제3호를 근거로 중대한 저작권 침해 사안을 발견한 경우 저작권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음.
(보호원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송한 수사의뢰서를 제시하면서)우리 심의위원회는 2019. 8. 27. 개최한 제2019-167회 회의에서 불법복제물등을 직접 전송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보호원이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4406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 해당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이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사이트를 제시하면서)이 자리에서 100%라고 확답하기 어렵지만, 국내 방송사, 영화사 등 권리자들이 이러한 방식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함.
(해당 프로그램을 재생하여 보여주면서)제가 어제 밤에 tvN에서 시청한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2' 중국 우한 편이 이미 스트리밍으로 제공되고 있음. 화질도 상당히 좋음.

- A 위원 : 도박사이트 광고가 중국어로 되어 있어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한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가 아닌

지?

- 성원영 전문위원 : (IP address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국내에 서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C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44066호는 시정권고 필요성이 인정되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사안으로, 시정권고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합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임.
  다만,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전체위원회에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여부를 논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B 위원 : 그 불법성의 폐해가 심각하나 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행정법규의 확대 해석에 해당할 수 있어 부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발 또는 수사의뢰 여부를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함.

- A 위원 :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함. 또한 문체부, 경찰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하여 합동 단속 중이므로 해당 TFT에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4406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하고, 해당 사이트 수사의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4067호~144911호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

공된 사안임.
(만화 '거미입니다만, 문제라도? (출판 : 디앤씨미디어)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4313호는 웹하드에서 어문저작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정품의 전권 판매가는 약 45,000원임.
(영화 '타짜: 원 아이드 잭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4505호는 2019. 9. 11. 개봉한 우리나라 시리즈 영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 A 위원 : 제휴 콘텐츠에 해당하지 않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제휴 콘텐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보호원은 제휴 게시물에 대한 심의는 요청하지 않고 있음.
(출판 '멸망 이후의 세계 (출판: 문피아, 카카오페이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4828호는 네이버 밴드 '소설 공유'에서 텍스트 파일을 제공한 사안임. 해당 어문저작물은 총 169화로 2016. 6. 10.부터 연재되어 2017. 1. 14. 완결되었고, e-book 구매 시 단행본 한 권당 판매가는 3,200원임.
(게임 'Dusk Diver'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4891호는 웹하드에서 2019년도 최신 게임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정품은 약 38,000원에 판매 중이고 배급사는 게임피아임.
(게임 '리틀 빅 워크숍'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4898호는 웹하드에서 2019년도 최신 게임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정품은 약 20,000원에 판매 중이고 배급사는 THQ 노르딕, 핸디게임즈임.

- B 위원 : 해당 게임물이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웹하드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얼마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면서)현금 110원에 상당하는 110 포인트에 판매되고 있음.
  (게임 '아우터 와일즈'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4899호는 웹하드에서 2019년도 최신 게임물을 판매한 사안임. 정품은 약 32,000원에 판매 중이고 배급사는 안나푸르나 인터렉티브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건번호 제2019-144067호~14491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만화, 출판, 영상물, 게임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의견임.

- B 위원 :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함.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이견이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44067호~144911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44066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전송한

불법복제물에 관련된 사안은 부결하되, 수사의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함. 그 밖에 안건은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3.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2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18.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오영주

위원 최현용